

의안번호	제 80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8월 25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0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8월 2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경기침체 대비 한시적 입장료 할인 등의 지원 근거 마련
- 입장료 할인 범위 확대 및 중복할인 규정 명확화
- 현행 청남대 입장료 현실화 필요에 따른 조례 개정

## 2. 주요내용

- 청남대 입장요금 조정(안[별표1])
- 입장료 할인 범위 확대(안 제4조)
- 중복할인 미적용 및 관광 활성화 근거 신설(안 제4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중복하여 할인하지 아니한다.

2. 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광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및 사업체,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고 행사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입장하는 경우: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

3.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: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 할인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입장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관광시설을 관람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1]

**입 장 요 금 표**

(단위 : 원)

구 분	개 인	단 체 야간개장 [17:30이후]	비 고
어 른	6,000	5,000	19세 ~ 64세
청소년	4,000	3,000	13세 ~ 18세
군 경 등			하사 이하의 자와 전투경찰순경 · 의무소방원
어린이	3,000	2,000	7세 ~ 12세
노 인			65세 이상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입장료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광협약을 체결한 <u>각종 기관 단체 및 사업체의 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(확인서 등)을 소지한 개인·단체가 다음 날까지 입장할 때</u> :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</p> <p>3. <u>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(확인서 등)을 소지한 개인·단체가 다음 날까지 입장할 때</u> : 별표1의 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. 단, 단체입장 어린이 및 노인은 1천원 할인</p>	<p>제4조(입장료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. <u>다만, 중복하여 할인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기관 단체 및 사업체,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고 행사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입장하는 경우</u> :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</p> <p>3. <u>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 :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 할인</p>